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0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1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6. 1. 13.)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현행법은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하지 아니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도에서 직권으로 축산계열화사업을 취소한 사례는 없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할 경우 향후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조류독감 발생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환경 검사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태 등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축산계열화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가축 재사육) AI 발생 농장의 경우 농장 내 청소·세척·소독을 완료하고 환경 검사를 통과한 이후 예찰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어야만 가축 재사육이 가능함

** (부화장의 영업재개) AI 보호지역 내 폐쇄된 부화장에 대하여 보호지역이 예찰 지역으로 전환된 후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영업 재개가 가능함.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한 청소·세척 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등록취소라는 제재 처분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할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취소 시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

[붙임]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6호”로,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 후”를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